

10. '92年度 國土利用에 관한 年次 報告書(要約)

資料提供 : 建設部

제1편 국토이용의 현황

1. 용도지역 지정

'75. 3. 21. 제주도와 남해안지역에 최초로 계획수립을 시작하여 '90. 8. 6 지정 완료

〈용도지역 지정현황〉

용도지역	'90	'91	증 감
합 계	99,243km ² (100%)	99,291km ² (100%)	48km ²
도시지역	13,311 (13.4)	13,455 (13.5)	144
취락지역	766 (0.8)	630 (0.6)	△136
경지지역	25,712 (25.9)	25,929 (26.1)	217
산림보전지역	50,173 (50.5)	50,647 (51.0)	474
공업지역	56 (0.1)	75 (0.1)	19
자연환경보전지역	6,332 (6.3)	6,392 (6.5)	60
관광휴양지역	181 (0.2)	183 (0.2)	2
수산자원보전지역	568 (0.6)	518 (0.5)	△ 50
개발촉진지역	2,140 (2.1)	1,462 (1.5)	△ 678
유보지역	4 (0.1)	-	△ 4

2.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현황

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은 타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이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법령에 의하여 지역·지구·구획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.

지역·지구·구획 지정현황

구분	지역·지구·구획명	지정면적(km ²)
• 농경지보전	• 절대농지	13,418
• 산림지보전	• 보전임지	49,328
• 공업용지 공급	• 국가공업단지	758
	• 지방공업단지	127
	• 농공단지	37
• 자연 및 환경보전	• 자연공원	7,454
	• 상수원보호구역	1,239
	• 문화재보호구역	960
	• 자연생태계보호지역	55
• 관광개발	• 관광지	286
• 기 타	• 택지개발예정지구	241
	• 묘지의 집단화구역	48
	• 온천지구	79

3. 지목별 토지이용

전국의 산림지는 국토면적의 66.2%인 65,701km², 농경지는 22.4%인 22,267km²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의 4.4%에 불과한 면적이 대지,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로 이용되고 있음.

지목별토지이용현황

구 분	'90	'91	증감('91/'90)
전 체	99,274km ² (100%)	99,300km ² (100%)	26km ² (0.02%)
농 경 지	22,300 (22.5)	22,267 (22.4)	△33 (△0.15)
산 립 지	65,571 (66.0)	65,701 (66.2)	130 (0.78)
대 지	1,937 (2.0)	1,966 (2.0)	29 (1.50)
공 장 용 지	246 (0.3)	267 (0.2)	21 (8.53)
공 공 용 지	2,112 (2.1)	2,156 (2.2)	44 (2.08)
기 타 (하 천 등)	7,108 (7.1)	6,943 (7.0)	△ 165 (2.32)

※ 자료 : 내무부 지적통계

4. 토지거래질서 확립

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토지거래신고구역 및 규제구역 지정

신고구역 및 규제구역 지정현황

구 분	지정횟수	행정구역	면적 (km ²)	전국토대비(%)
신 고 구 역	14차 (2차)	36시 97군	41,586 (6,256)	41.89 (6.3)
규 제 구 역	13차 (4차)	66시 131군	42,932 (11,193)	43.25 (11.3)

※ ()내 : '91년 지정

- 1991년중 전국의 토지 총거래량은 전국토 99,300km²의 1.5%임

구 분	'90년	'91년	증감 ('91/'90)
건 수	1,031,191	1,088,469	5.6%
면 적 (km ²)	2,515	1,468	△ 41.7%

5. 도시의 개발과 정비

- 도시수 : 1특별시, 5직할시, 68시, 178읍

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 대상도시

구 분	대상도시	수립	미수립
도시기본계획	82개	75개	7개
도시계획재정비	246개	241개	5개

- 도시재개발사업 추진
 - 주택개량재개발 : 전체계획 292지구 13.6km²중
 - 155지구 5.2km² 완료, 63지구 4.0km² 시행중, 미착수 74지구 4.4km²
 - 토지구획정리사업 : 전체계획 516지구 467km²중
 - 403지구 426km² 완료, 101지구 38km² 시행중, 미착수 12지구 3km²

6. 지역개발

- 특정지역종합개발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(5개 지역)
 - 태백산, 다도해, 제주도, 88올림픽고속도로 주변, 통일동산
 - 전주권지역개발
 - 1단계사업 완료
 - 사업기간 : '84-'89. 12
 - 사업비 : 1,220억원
 - 2단계사업 추진
 - 사업기간 : '89-'93
 - 사업비 : 4,436억원
- ※ '91년말까지 1,614억원을 투입하여 공단조성 168만평, 공단 지원도로 3.6km, 도시간선 및 오지도로 정비 20.7km 추진

7. 택지·주택공급

- 택지개발 : 227km² ('91년중 32km² 개발)

택지개발현황

(단위 : km²)

구분	계	'82 ~ '90	'91
합계	227	195	32
토지개발공사	103	90	13
주택공사	35	30	5
지방자치단체	89	75	14

- 주택공급

· '91년중 613천호의 주택건설(계획 : 600천호)

주택건설실적

(단위 : 천호)

계	공공부문	민간부문	계획대비(%)
613	164	449	102

주택보급율추이

구분	'80	'85	'91 (추정)
전국	71.2%	69.8%	74.2%
도시	56.6	57.8	67.3
농촌	91.7	92.9	95.9

8. 수질원의 이용

- 총 수자원 1,267억m³중 22%인 282억m³ 이용
 - 생활용수 : 49억m³(17%)
 - 농업용수 : 151억m³(54%)

- 공업용수 : 25억 m^3 (9%) · 유지용수 : 57억 m^3 (20%)
- 상수도보급율 : 전국 81.2%, 1인당 급수량 : 372ℓ /일

9. 도로포장

- 도로 총연장 58,088km중 76.4%인 44,378km가 포장됨

도로 포장 현황

구 분	총연장	포장연장	포장율
합 계	58,088km	44,377km	76.4%
고속국도	1,597	1,597	100
일반국도	12,114	11,140	92.0
특별시도	12,717	10,717	84.3
지방·시·군도	31,660	20,923	66.1

10. 환경오염

• 대기오염

대기오염은 아황산가스, 먼지, 오존 및 질소산화물, 산성비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는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음

※ 연간 환경기준

- 아황산가스(SO_2) : 0.5ppm
- 먼지(TSP) : 150 $\mu g / m^3$
- 오존(O_3) : 0.02ppm, 질소산화물 : 0.05ppm
- 산성비 : pH 5.6이하

• 수질오염도

- 주요하천 하류(한강, 낙동강, 금강, 영산강) : BOD(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)가 3.0~5.6 mg / l 로서 상수원수 3급 기준치(BOD 6 mg / l) 이하임

· 주요지천 하류(중량천, 금호강, 감천, 광주천) : BOD가 9.7 ~ 42.6mg / l로서 '90년 (BOD 15.5 ~ 36.9mg / l)과 거의 비슷한 수준임

• 해양오염

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·도시화, 임해도시 및 공단조성, 공유수면 매립·점용, 해상물동량의 증가로 해양오염이 점차 심해지고 있음

• 폐기물발생

인구증가, 산업화·도시화등에 의하여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

폐기물 발생현황

(단위 : 톤/일)

구	분	'85	'90
계		90,867	145,374
쓰	레 기	57,518	83,962
사	업 장 폐 기 물	33,349	61,412

제2편 국토이용에관한시책

1. 국토균형개발의 추진

-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
 - 국토개발의 4대 목표
 -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
 - 생산적·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의 구축
 - 국민복지향상과 환경보전의 강화
 -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

- 국토개발의 실천전략
 -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억제
 - 신산업지대의 조성 and 산업의 고도화 추진
 - 통합적 교통망의 구축
 - 환경부문의 투자확대 및 제도확립
 -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와 남북교류지역의 개발·관리
- 수도권정비
 -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수도권 전역을 5개 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 특징있는 정비전략과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
 - ※ 권역별 정비 지침
 - 이전촉진권역 :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 제한
 - 제한정비권역 : 이전촉진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 허용
 - 개발유도권역 : 기존 도시를 포함한 공업도시 개발
 - 자연보전권역 : 상수원과 자연자원을 보전
 - 개발유보권역 : 도시화를 촉진하는 개발행위 억제
- 서해안개발
 - 서해안 전진기지 구축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
 - 첨단산업기반 조성
 - 교역기반 및 운송체계 정비·확충
 - 수자원·관광·문화·휴양시설 정비 개발
- 광역지역 개발
 - 특정지역의 종합개발
 -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중에는 소득 및 개발수준이 낙후된 강원내륙, 경북북부, 지리산·덕유산일대와 민통선일대 접경지역 및 백제문화권, 울릉도·독도등 특수목적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지정·개발할 계획임
 - 전주권지역 개발
 - 지역개발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,436억원을 투입 '93년까지 완료할 계획임

2. 토지정책의 추진

- 토지거래 신고·허가지역의 확대, 임야매매증명제의 시행등으로 토지거래규제의 강화
- 택지소유상한제,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념제도의 시행
- 투기예고지표를 개발하여 투기발생에 즉각 대응하고 중앙 및 지방에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부동산투기단속 체계의 확립
- 부동산중개업관련 제도 개선등

3. 도시개발

- 신도시건설(수도권 5개신도시 : 분당, 일산, 평촌, 산본, 중동)
- 도시환경의 개선
 -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
 -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설계등 입체계획 수립기법 활용
 - 용도지역제의 합리적 재조정
 - 도시주차장 정비

4. 주택공급

- 정책방향
 - 중산층이상 : 시장기능에 의한 자력해결
 - 중산화 가능계층 : 세제·금융등 간접지원
 - 저소득층 : 정부 재정투자를 통한 직접지원
- 건설계획
 - '92 ~ '96기간중 250만호(년간 50만호)의 주택건설(공공부문 127만호, 민간부문 123만호)

5. 수자원개발

- 수자원장기수급대책 추진

-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자원의 적기 개발
- 중소유역의 물부족 해결을 위하여 중규모댐 건설의 촉진
- 지역간 용수수급균형을 위하여 4개 수역권을 중심으로 개발(한강, 낙동강, 금강, 영산
 - 섬진강 수역권)
- 홍수피해의 경감을 위한 하천개조의 촉진
- 하천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을 정비

6. 도로포장

- '93년까지 일반국로를 완전 포장하고 지방도 및 군도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기간내에 완전 포장할 계획임

7. 환경오염 방지

- 대기보전대책
 - 저황유 및 청정연료(LNG등)의 공급 확대
 - 분진의 감소를 위한 집진시설등 방지시설 설치
 - 오염물질배출량이 80~90% 감소된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등
- 수질보전대책
 - 전국 26개 수계에 대하여 지형 및 이수목적에 따라 19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목표수질을 정하고 배출허용기준차등 적용
 - 권역별 수질종합보전대책 수립 추진
- 해양오염 대책
 - 해역별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인 수질조사 실시등의 종합적인 연안오염방지대책 수립 추진
- 폐기물관리 대책
 -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실시
 - 일정 규모이상 공단 조성시 자체처리장 설치 의무화등